

의안번호	2209790
의 퇴 인	권영진의원
회 답 일	2025.4.28.
추계번호	25B2262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0조의2제2항 신설 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)	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시정 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80조의2제2항 신설 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개정안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재 감경 기간을 ‘3년 미만’으로 운영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경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
- 현행법 제80조의2제1항¹⁾에서는 허가권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조례를 통하여 감경기간을 달리 규정하여 적

1) 제80조의2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)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용하고 있음

-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45조제5항²⁾ : 1~2년
- 「울산광역시 건축 조례」 제72조제3항³⁾ : 2년
- 「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」 제43조제4항⁴⁾ : 1년
- 개정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이 연장될 경우, 감경 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 수, 대상 건축물 면적,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감경액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현황 정보가 부재하여 현시점에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실적은 별도의 [참고자료]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2) 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

1.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**1년**
2.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: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**1년**
3.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: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**2년**

3) 제72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③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**2년**을 말한다.

4) 제43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**1년**을 말한다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부과건수	부과금액	징수액	징수율
서울	50,044	82,524,311	45,565,068	55%
부산	7,350	8,415,158	4,697,647	56%
대구	788	3,298,300	2,196,539	67%
인천	6,229	5,940,010	2,575,406	43%
광주	2,201	4,939,941	2,874,332	58%
대전	460	1,817,080	1,047,078	58%
울산	457	1,538,926	972,920	63%
세종	111	259,063	241,725	93%
경기	7,251	26,974,760	12,202,652	45%
강원	1,466	4,902,821	2,642,900	54%
충북	1,918	3,588,313	2,573,638	72%
충남	4,824	15,244,732	11,053,610	73%
전북	719	3,055,323	2,049,988	67%
전남	1,652	5,041,516	2,786,012	55%
경북	8,031	20,484,680	17,183,187	84%
경남	2,522	7,634,916	5,273,737	69%
제주	752	1,388,883	1,098,372	79%
총계	96,775	197,048,733	117,034,811	59%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